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on Experience of Immigrants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최 배 영**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 터 장 한 은 주***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Plural Professor : Choi, Bae-Young

Hwaseong-cit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Director : Han, Eun-Joo

<Abstract>

This thesis is based on an in-depth interview on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en immigrants who reside in 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at is located in Gyeonggi-do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rough it's basic data for improvement in the operation of KIIP in the future by grasping participation process in KIIP that the immigrants have experienced, problems involved in their operation, and related requirements.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 for th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KIIP wa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learn Korean,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in Korea. Second, as a difficulty in participation in KIIP,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loomed large. Third, regarding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KIIP, marriage immigrants needed to continue Korean language education, whereas other immigrants revealed a demand for opening evening classes or weekend classes. In the final analysis, it seems that for KIIP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immigrants to have a vision for their life in the future, as well as for its realization in Korean society, policy-oriented institutional support that pays attention to their life situation and demands is badly needed.

▲주요어(Key Words) : 이민자(immigrant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한국어과정(korean language course), 한국사회이해과정(korean society comprehension course)

* 2011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주 저 자 : 최배영 (E-mail : kb9112@hanmail.net)

*** 교신저자 : 한은주 (E-mail : ejhan86@hanmail.net)

I. 서론

2011년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26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행정안전부, 2011). 이 같은 흐름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적극적인 개방 정책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구 인동의 변화로 더욱 가속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5년간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이행해오고 있다. 2012년에도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적극적인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외국인 인권 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사업이 전개된다(법무부, 2012b). 이 가운데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이수제를 도입하여 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이하 “이민자 및 국민 등”이라 한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등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제반 활동이 시행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민자란 대한민국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의미한다(법무부, 2012c).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이민자는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동포 등을 포함하는 일반이민자와 우리 국민의 배우자가 된 결혼이민자로 대별된다.

그동안 선행된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정학, 사회학, 법학,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진전이 되어 왔는데 이들은 사회통합 정책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개선안(김술, 2008; 김일란·김남형, 2008;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9; 문민 2010; Chae, 2011; Kim, 2009; Kim, 2009; Koh, 2011; Lee, 2008, 2010; Park, 2009; Seo, 2010; Seo, 2011; Shim, 2011)을 제시한 특징을 보인다. 한편 가정학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Chae, Hong & Song, 2009; Choi, 2008; Kang & Chung, 2009; Kim, 2006; Kim, 2010; Kim, Kim, & Choi, 2010; Koo, 2007; Kye, Kang, & Jeong, 2009; Lee & Lee, 2010; Shin & Chang, 2010; Yoo, Hong, & Kim, 2008) 내지는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Hong & Kim, 2009; Kim, 2008; Kim & Anh, 2010; Kim et al., 2008;

Kim & Hong, 2010; Kim, Kim, & Lee, 2008; Lee & Kang, 2007; Oh, 2008)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와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적 쟁점에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Kang and Byun(2010)은 사회통합의 견지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서비스를 파악하는데 일부 국한되었다. Sung(2011)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주류문화가 존재하는 미국의 사회통합 정책에서 현실성 있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통합정책의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였고, 사회통합 정책의 요구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의 환경 촉진(여성가족부, 2011)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정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의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2009년 이래 지난 3년 간 시행되어온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시작 단계에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경기도 소재 S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과정 및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향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별 사회통합 정책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의미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단일한 체제 속에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간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이란 단지 정치나 법적인 수준에서의 체제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생활방식에 대한 공동가치체계, 교육 등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통합 정책은 이민자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그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하, 2010: 10). 각 국가마다 이민의 역사와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 정책은 그 국가의 특수성을 투영하지만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각 나라마다 유사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사회통합은 정주민과 유입이민자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주요 대상은 유입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민자들로 간주되고 있다.

먼저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융화를 지향하는 동화주의를 채택한 유럽의 국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네덜란드는 1998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1년 동안 네덜란드어와 시민교육 및 직업준비교육을 포함하여 600시간의 통합강좌를 실시한다. 2007년 이후 모든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의무화되었으며,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해외기초사회통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Kim, 2009). 독일은 2004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였다. 2008년부터 이민자는 900시간의 독일어교육과 60시간의 일반사회지식교육을 받는다(김일란·김남형, 2008). 결혼이민자의 경우 독일에 입국하기 전 기본적인 독일어교육을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통합교육정책과 사회통합을 연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통합교육 이수율 의무화하였다. 프랑스어(200~400시간)와 시민교육(30시간)으로 구성된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결혼이민자 역시 비자를 신청하는 나라에서 프랑스어 등의 기본지식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2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프랑스어와 시민교육을 이수한 후 수수료 없이 나오면 비자가 발급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a: 448-451).

한편 소수집단의 고유성 인정을 통해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로 갖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사회통합 정책(Castles & Miller, 2003; Gilbert, Stead, & Ivancevich, 1999)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민자들에 의해 다문화사회를 형성한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들 국가 간에도 사회통합 정책의 내용과 수준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인종, 종족, 종교, 언어와 관계없는 포괄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캐나다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여 단시일 내에 정착 및 적응을 유도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캐나다 이민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공동체 사회 자원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예산을 투입하여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신규이민자 언어교육, 자원봉사자가 호스트로서 신규이민자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호스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1973년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여 시민적 의무, 상호존중, 상호공평성공공이익추구의 이념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총괄부처인 이민

시민권부가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2012a). 이주민을 위해 민간단체, 노조, 일부 지방정부 등에서 부가적 재정이 지원되는 가운데 최대 500시간 내지는 1,000시간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Kang & Byun, 2010). 최대의 이민 국가인 미국은 문화다원주의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주류문화가 엄연히 존재한다(Sung, 2011). 2003년부터 국토안보부 산하 국적이민국이 이민, 귀화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민자 통합에 있어 비교적 최소한의 역할만을 한다. 이민자는 정착을 준비하거나 정착한 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영어를 학습하고 미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미국 정부도 시민권자의 미국 역사 지식과 시민적 소양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민소양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고 교육성취도가 낮은 소외계층 및 소수민족의 학생,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을 위해 NCLB(No Child Left Behind)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민자 자녀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긴밀한 교육적 연계 속에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 교육의 목적은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데 있다(주성훈, 2010).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이민자들을 통합하기 위해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김기하, 2010: 11)되는 가운데 동화주의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되 다문화주의를 구호로 내건 이중적인 구조(Kim, 2009)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사회통합의 합의를 위한 법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통합에 관련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 2007.5.17 제정)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 2008.3.21 제정).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이라는 용어가 각 법률 내에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법무부(2012c)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은 다문화사회 환경을 이루어 이민자의 한국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동훈과 김명아(2008)도 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국가에서 습득한 문화·가치와 우리나라의 문화·가치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정의하면서 그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회통합 정책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a: 449)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첫째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집거지 슬럼화 및 치안 불안, 정치적 극우성향 초래, 2세 성장과정의 부정적 영향 등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향유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기르는데 주안을 두었다. 둘째 국제결혼을 통해 귀화하는 이민자의 출신국가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과 같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식 및 국가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였다. 셋째 이민자는 그 외모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받기 쉬워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갈등의 원리로 작용하기 쉽고, 이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와 생활양식의 필요성을 함축했다. 넷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민자를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국가 발전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이자 가치 있는 사회 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사회통합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다문화사회의 중대한 변혁의 시기에 진입한 한국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했으나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사회통합 제도를 건설하게 다져온 국가들과 같이 체계적인 기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인 동시에 구호만 다문화주의가 아닌 진정 다문화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들이 각자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을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행정안전부(2011)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002,742명(79.3%), 한국국적 취득자는 111,110명(8.8%), 외국인주민 자녀는 151,154명(11.9%)을 차지한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에는 외국인근로자 552,946명(전체 외국인주민의

43.7%), 결혼이민자 141,654명(11.2%), 유학생 86,947명(6.9%), 재외동포 83,825명(6.6%), 기타 137,370명(10.9%)으로 보고되었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혼인귀화자 69,804명(5.5%)과 기타사유 취득자 41,306명(3.3%) 등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국적취득방법이 귀화 또는 결혼이주로 국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b: 53)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한국국적 취득 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로의 이민자 유입에 수반되는 국적취득 희망자들의 증가로 이들의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200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필기시험 등의 귀화격적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한국어능력과 기본소양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일반귀화 신청자의 경우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는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즉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및 다양성의 이해 등 기본소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점이 문제였다. 더욱이 우리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는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이민자 본인은 물론 그 2세까지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우려되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도록 유도하고 사회부적응, 국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교육과 취업의 기회 박탈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함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a: 454-455).

둘째,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NGO, 그리고 종교기관 등의 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별적,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교육 지원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문제를 낳았다. 반면 이민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적 취득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이 한국어 습득과 사회·문화·제도 이해 등의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효율적 국가 자원 배분, 교육이수 후 정책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이민자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2010: 4-5). 그 결과 대표적인 변화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도모를, 한국어교육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어원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과 강사 양성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와 교육이수에 따른 국적 취득 시 혜택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거주지에서 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으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융합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2) 경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 및 자료수집

2007년 3월 법무부는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 가운데 귀화신청을 한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귀화자와 동일한 시험문제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적으로 치르게 하여 표준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이어 2007년 10월에는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이민자 정착지원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 및 제도 정비

2007년 9월에는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안이 마련되었다. 2008년 3월에는 법무부 훈령(612호)으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8년 4월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었다(Lee, 2010).

(3) 관계기관 의견 및 여론 수렴

2007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이민자 지원 관련 부서 과장급 회의를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고, 행정자치부 등 6개 중앙부처와 한국이민학회 등 3개 민간단체 관계자 회의 및 전국 14개 지역순회 설명회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세부내용과 의견이 수렴되었다. 2008년 4월과 7월에는 관계 중앙부처 과장급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본 골격 재분석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공청회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a, 452-453).

(4) 전문 인력 양성

2008년 12월 전국 20개 ABT대학(Active Brain Tower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총 398명이 최초로 양성되었다. 2009년 7월 전국 5개 ABT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자 312명 대상 보수교육을, 2009년 8월 전국 20개 시범운영기관 소속 활동 중인 한국사회이해과정 현직강사(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33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사회이해과정 소양교육이 실시되었다(Lee, 2010). 201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 10개 ABT대학에서 150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배출되었고, 2010년 10월과 11월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양성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강사 대상 보수교육을 20개 ABT대학에서 실시하였다. 2011년 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성 다문화강사 대상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8개 ABT대학에서 7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 운영기관 지정

법무부는 2009년 1월 전국 20개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동포, 결혼이민자 등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 시범사업에서 887명의 재한외국인들이 교육이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국적면접심사 실질화 조치에 의거하여 2010년 2월 1일 이후 귀화신청자부터는 혼인귀화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에게 국적면접심사 전면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단, 면접심사 면제대상으로 중국동포1세의 배우자, 유공자 후손, 15세 미만자, 국내 정규교육기관 3년 이상 수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가 명시되었다. 또한 2010년 1월 76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였는데 전국을 29개 거점구역으로 나누어 29개 거점운영기관을 지정하고 각 거점운영기관 산하에 일반운영기관들을 두어 거점별 학사운영, 강사관리,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2010: 15). 이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 4,056명의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며 이중 1,063명이 이수를 완료했다(Chae, 2011). 2011년 1월 법무부는 추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150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원거리 거주 또는 임신, 출산,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거점운영기관도 1개 포함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비롯해 3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시범지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2월에는 전국적으로 239개 기관(거점운영기관 47개, 일반운영기관 192개)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4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2012년 3월에는 30개 일반운영기관들(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들의 수에 견주어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경과를 요약하면,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 내 부적응 혹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부족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즉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각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의 중복됨을 예방하여 보다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1)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구성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들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이민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국적 취득이나 자격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나 동포는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선택 시에는 귀화필기시험과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심사 대기기간 단축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결혼이민자 역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하면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면접심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전문인력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점수제에 의해 거주자격(F-2) 변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영주자격(F5-1)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어시험 점수 제출을 면제받는다(법무부, 2012a).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Table 1)되어 있으며, 단계별 지정교재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 0~4단계에 해당되는 한국어과정은 한국어로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한국어 모음과 자음부터 배우는 0단계(기초),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수준인 1단계(초급1),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는 수준인 2단계(초급2),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 등으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 3단계(중급1),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된 상황에서 적합한 문화적 방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 4단계(중급2)로 진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해당되는 한국사회이해과정은 한국의 법률, 역사, 풍습, 공동생활, 언어, 생활정보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 시민으로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올바른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한국사회이해과정 표준교안 개발 연구를 수행한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2009)에 따르면 이 과정은 이민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져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한국사회이해과정의 내용은 기초교육, 정치, 역사, 법률, 지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활 및 시사, 법질서 및 법문화, 지역사회이해 등의 12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들 영역 가운데 다른 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한 12영역(지역사회이해)을 제외하고 11개 영역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체 활동이 가능한 12영역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내 최초 입국 후 3개월 이전이라면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장이 따로 정하는 기초생활정보 제공 프로그램인 Happy Start에의 참여로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12영역은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운영 체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별 안내문 발송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이트의 신청자 모집공고로 이루어진다. 참여 신청은 2011년까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2012년부터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012년 발표된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한 이민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지정하는 별도 장소에서 한국어 능력의 기본소양에 대한 사전평가를 치르게 된다. 사전평가는 필기시험(50문항)과 구술시험(5문항)을 실시한다.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및 이수해야 할 단계(<Table 1> 참조)가 지정되면 이민자는 등록 기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들 중 원하는 곳에 온라인 등록을 한 후 자신이 해당되는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진입한다. 대개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동포 등의 일반이민자는 0단계부터 4단계까지 415시간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하는 반면 우리 국민의 배우자가 된 결혼이민자는 0단계부터 2단계까지 215시간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후 3단계와 4단계는 면

Table 1. Program Course

Classification	Level	Level Zero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Course	Korean language course					Korean society comprehension course
		Beginner	Junior 1	Junior 2	Intermediate 1	Intermediate 2	
Completion Hours		15hours	100hours	100hours	100hours	100hours	50hours
Level Test (Points)	Marriage Immigrants	0~10	11~29	30~49	Exempted		50~100
	Other Immigrants	0~10	11~29	30~49	50~69	70~89	90~100

제를 받는다. 한국어과정은 단계별로 과정이 종료되면 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하다. 만일 불합격하면 해당 단계를 재이수하거나 일정 시간의 보충수업 후 다음단계로 이동을 허용한다. 배정된 한국어과정 최종단계 종료 후에는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중간평가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며, 한국어 전반에 대한 필기시험(30문항)과 구술시험(5문항)으로 이행된다. 60점 이상을 득점하여 중간평가에 합격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KIIP-KLT) 합격증이 발급된다. 만일 중간평가에 불합격하더라도 5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한해 재응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간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 일반이민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한국어과정 완료 후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과정 50시간을 이수한다.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수료한 이민자에게는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종합평가 신청을 한 이민자는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이해에 관한 필기시험(40문항)과 구술시험(5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를 받는다.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 합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국이민귀화자격시험(KINAT) 합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발급해준다. 불합격한 경우 5단계를 재이수하면 별도의 종합평가는 없이 이수증이 발급된다. 1년 이내에 종합평가 재응시도 가능하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2012).

각 단계별로 이수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해야 해당 단계의 이수가 인정되므로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이민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운영기관에 이수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유 종료 후 계속해서 해당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고, 재등록 시 과거의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참여도중 체류지 변경 등으로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자는 30일 이내에 변경되는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무단으로 30

일 이상 결석한 이민자는 제적조치하고,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이 모두 무효화된다.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법무부, 2012c).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종합하면 이는 한국 사회에 유입한 이민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한국어를 시작으로 한국의 정치, 역사, 법률, 지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 독일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첫째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일부 제한적으로 이민자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져 보다 적극적인 정보체계를 통한 참여 유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둘째 한국어과정 이수단계가 일반이민자와 결혼이민자 간에 차등이 있어 2단계(한국어과정 초급2)를 끝낸 결혼이민자들이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바로 들어가 교육을 받음에 있어 학습내용의 용어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5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이해과정의 교육내용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활용과 취업준비의 차원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4. 선행연구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논문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들은 프로그램 시행 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된 2009년 이후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제도를 연구한 Kim(2009)은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다양한 이주자의 특성

(예: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치중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 Lee(2010)도 결혼이민자 외에 외국인근로자, 난민, 동반입국 혹은 중도입국한 이민자 2세, 귀화자 등 이들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 Shim(2011) 역시 여성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일반이민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보고하였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장소에 관련한 시행의 문제점으로 교육기관 수의 부족과 거리상 접근의 어려움이 제기되어왔다. 다문화가족정책을 연구한 Kim(2009)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교육기관의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Shim(2011)은 가까운 곳에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없어 교육을 받기에 불편하고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너무 멀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국의 초등학교나 종교기관, 관공서 등에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교사를 파견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과제로 교육 시간상의 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문민(2010)은 학습자가 성인이고 대부분 경제여건이 넉넉지 않은 이민자들이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주당 수업시간을 늘려 집중교육을 하거나 주말에 편중하여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과 병행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Lee(2010) 역시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의 교육 형태로 주간교육 이외에 야간교육과 주말교육 실시를 제안하였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단계에 있어서도 검토 및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한 Park(2011)은 결혼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이수하는 2단계(한국어과정 초급2)만으로는 실제 한국 사회 적응이나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에게 2단계까지라는 제한을 두어 더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급 이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이해과정 단계에 들어가는 일반이민자와 결혼이민자간 한국어 수준의 차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논의한 문민(2010)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일반이민자와 2단계만 이수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한국사회이해과정도 수준별로 교육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평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진정 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관련하여 Park(2009)은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재 개발은 물론 이들의 한국 생활적응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보다 넓고 포괄적인 맥락의 한국 적응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Lee(2010)는 입국 초기의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교육이 최선의 교육이지만 조선족과 사전에 한국어를 습득한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 및 문화교육과 더불어 취업의 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선행논문들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안에 관련하여 대부분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래 지난 3년간 시행되어온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자체가 시작단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접근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경험 실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외적으로 Shim(2011)은 청주거점지역에 거주하는 64명의 이민자들(여성 62명,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시행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계처리를 통한 양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역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민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로 좀 더 깊이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는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현상학에 가장 적합한 문제의 유형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공통된 또는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실천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또는 현상의 특성을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공통된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Creswell, 2007: 95).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S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심층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S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거점운영기관인 수원외국인복지센터 산하에 있는 일반운영기관들 중 하나이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10명이었으며, 이들을 비자 유형별로 보면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5명과 방문 혹은 취업/사업을 위해 입국한 일반이민자 5명으로 대별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은 모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 최종단계인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에 있었으며, 일반이민자들은 3단계(한국어과정 중

급1) 혹은 4단계(한국어과정 중급2)를 이수하고 있었다. 이들의 현 거주지는 화성시 3명, 안성시 3명, 평택시 2명, 수원시 1명, 오산시 1명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앞서 S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한 뒤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간혹 연구대상자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있지만 기초적인 단어와 문장 정도를 이해하는 한국어과정 초급2 수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se	Gender	Age	Marital status	Nationality	Nationality of spouse	Type of visa	Years of residence in Korea	Residence in Korea	Family in Korea	Occupation	Process phase of Program	Reference
1	female	45	married	China	Korea	F-2	3	Anseong	husband, 3 sons	house wife	Level 2→5	marriage immigrant
2	female	32	married	China	Korea	F-2	1	Pyeongtaek	husband	house wife	Level 0→1→2→5	marriage immigrant
3	female	38	married	China	Korea	F-2	3	Osan	husband	house wife	Level 1→2→5	marriage immigrant
4	female	25	married	China	Korea	F-2	1	Pyeongtaek	husband	house wife	Level 0→1→2→5	marriage immigrant
5	female	23	married	Vietnam	Korea	F-2	2	Hwaseong	husband, 1 son	shop keeper	Level 5	marriage immigrant
6	female	47	married	China	China	F-1	6	Anseong	mother (Korean citizenship) (* husband in China)	no job	Level 3→4	other immigrant
7	male	37	married	USA	USA	E-2	2	Suwon	fiancee	English instructor	Level 3	other immigrant
8	male	39	married	Bangladesh	Bangladesh	D-8	9	Hwaseong	wife, 2 daughters	restaurant business	Level 2→3→4	other immigrant
9	male	31	non married	China	-	F-1	4	Hwaseong	mother (Korean citizenship), brother, stepfather	laborer	Level 1→2→3→4	other immigrant
10	male	27	married	China	China	F-1	2	Anseong	mother (Korean citizenship), sister, wife	no job	Level 1→2→3→4	other immig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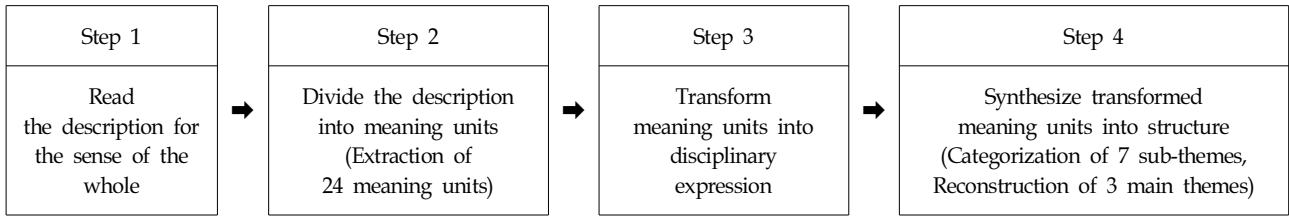


Figure 1. Proces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준을 지닌 결혼이민자의 경우 연구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교육담당자에게 일부 용어에 대한 통역을 의뢰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개별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오는 날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면접횟수는 1회이며, 사례별로 75분에서 85분 정도의 면접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 질문은 Seo(2011), Shim(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조사 문항을 토대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 목적, 프로그램의 운영체제와 교육내용 및 교육환경에 대한 견해, 수업 참여 시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에 관한 반구조화 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 시 질의응답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현장노트를 기록하여 중요한 단서와 내용, 면접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연구자의 솔직한 감정 등을 기술하였다. 각각의 면접이 끝난 뒤 내용이 부족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취자료는 연구자가 녹음파일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 내려가는 전사 작업을 시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 분석과정에 의거하였다(신경림 등, 2004: 243-245). 1단계는 전체에 대한 느낌(sense)을 파악하는 단계로 연구자는 이를 위해 녹음된 자료와 전사본을 여러 번 읽기를 반복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초점을 두고 연구대상자의 말 그대로에서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연구 현상을 강조하며 연구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으로 된 의미단위를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Park(2011)의 견해와 같이 학문적 용어가 일상생활 용어보다 훨씬 협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문적 용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활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4단계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연구 현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로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 따라 연구자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24개의 의미단위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7개 의미단위로 범주화 하였고 최종적으로 3개의 중심의미로 주제를 재구성하였다(<Figure 1> 참조).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Hong & Ahn, 2011)하고자 Giorgi가 제시한 유효성 확인(Michael, 2001: 30) 작업을 위해 관련 전공자들과 협의를 시행하였다. 즉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석사학위소지자 1명과 함께 의미단위들을 규정된 후 적절한 용어로 표현하였고, 범주와 주제 명명의 적절성에 대해 다문화가족 관련 박사과정 수료생 1명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분석에 대하여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1명에게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IV. 연구결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Figur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결정

1)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
 (1)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얻음
 연구대상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사례 1, 2, 3, 4, 6, 8, 9, 10)를 통한 경로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8개의 사무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14개 사무소(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양주, 여수, 춘천, 창원, 청주, 제주, 전주)가 지역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들을 관할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심사, 체류, 비자 발급, 국적 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Themes	Decision to participate in KIP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of KIIP			Demand for improvement in KIIP	
Sub-themes	Route of information acquisition	Motive for participation	Adaptation to the curriculum	Participation attitude	Difficulty of completion	Demand for operational improvement	Views on completion requirement
Meaning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from Immigration office - Internet 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 Learning Korean language - Preparation for the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l test for placement - Competent instructor - Satisfactory educational environment ⇒ - Recognizing the curriculum useful in actual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desire for participation - Wishes after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 Worrying abou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 Feeling of burden related to their age - Family situation - Compatibility problems with regular work - Long-distance movement due to lack of a nearby educational instit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 - Opening of evening and weekend classes that are more convenient their work schedule - Continu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 Improvement in the textbooks - Life adjustment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val of the requirement - Disapproval of the requirement

Figure 2. Participation Experience of Immigrants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들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 신청하러 갔다가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낸 안내문을 받고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 과정을 알려주셨나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했더니 알려주셨어요.(사례 2)

(이 정보를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알게 되었어요.(사례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가 저기[국적] 신청할 때 엄마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계신 선생님이 시험에 3번 다 떨어졌어도 500시간만 배우면 바로 국적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머릿도 안 좋은데다가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다가 이게 괜찮겠다 싶어 이거 신청했어요.(사례 6)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국적 취득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 정보를 어디에서 알게 되셨나요?) 댄 처음에는 우리 온양

온천에서 살았어요... 그 때는 대전출입국 관할이었어요. 편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때 출입국 가서 시험 봤어요.(사례 3)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얻음

인터넷 검색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정보 습득의 경로(사례 5, 7)가 되었다. 결혼이민자인 사례5는 남편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게 되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경우였다. 사례7은 인터넷에 게재된 F-2비자 관련 안내를 보고 정보를 얻었다. 2011년 8월 법무부는 거주(F-2)의 체류자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E-1~E-7, D-2, D-5~D-10)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의 역량과 자질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를 취득한 사람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애기 아빠가 컴퓨터에서 찾았는데.(사례 5)

(사회통합을 하라고 어디에서 알게 되었나요?) 인터넷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표했어요. F-2비자 발표했어요.(사례7)

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는 동기가 존재함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했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 국적 취득을 위해 참여하게 됨

국적 취득을 위해(사례 1, 2, 5, 6, 9, 10)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대상자들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동기가 유발되었다. 예를 들어 국적 취득을 신청하고도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대기 기간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단축되므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원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결혼이민자(사례2)도 있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귀화시험에 낙방하고 국적 취득의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신청한 일반이민자(사례 6, 9)도 있었다.

근데 남편 국적 나와 좋아요. 근데 전 여기 국적 나와 여기 영주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남편 말이 국적 나와 좋아요.(사례 2)

(국적 취득이 법무부에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쉬운 것이라 여겨 이 과정을 열어 놓은 것이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래도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느 게 더 나으세요?) 시험 보는 것은요. 제가 그러니까 3번을 다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사례 6)

(이 과정을 들어오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시험 보셨었죠?) 네, 떨어졌어요. (그럼 남동생이 먼저 붙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남동생은 귀화... 붙었어요.(사례 9)

(2)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참여하게 됨

한국어 습득(사례 2, 3, 4, 8, 9)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동기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적 취득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셨나요?) 지금은 생각 없어요. 제가 한국어 공부 필요 있어요.(사례 4)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금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세요?)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국에 사는 것.(사례 8)

(이 과정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요?) 주민등록도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한국말도 배우려구요.(사례 9)

(3)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참여하게 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는 한국 사회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도 함축하고 있었다. 즉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국어 습득이나 국적 취득 외에도 향후 취업(사례 1, 7)이나 사업

(사례 3)을 위해 혹은 앞으로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교육 제도(사례 4, 5)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특히 E-2비자를 갖고 있는 일반이민자 사례7에게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점수제에 의한 거주(F-2)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보장되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된다. 평가항목이 공통항목(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현소득)과 가·감점항목(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국유학경험·국내 사회봉사활동·해외전문분야취업경력 등의 가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감점)으로 되어 있는 점수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10점이 가점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긴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이것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직을 위해서... 취직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 다 끝나고 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 1)

(왜 이것 공부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F-2비자. 새로운 비자 받으러. (그 비자를 받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교육이랑 나이... 어떤 포인트를 받아야 해요. 이 프로그램 졸업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사례 7)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이유가 국적취득을 위해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요. 저도 나중에는 우리 남편도 능력 많이 없어요. 회사 다니니까 월급만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회사 다니기 힘들어 하니까 일단 우리 둘이 장사하고 싶어요. 일단 장사하면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럼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왔어요.(사례 3)

(사회통합 들으시는 이유가 국적 취득하기 위해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일단 국적 받고 우리 애기가 학교에 들어갈 때 좀 애기가 불안한 것 없어. 그리고 국적을 받으면 기능은 많잖아요. 연장보다...(사례 5)

2.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

1)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적응해감

(1) 단계배정을 위한 사전평가를 받

본 연구대상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필기시험으로 사전평가를 치른 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가 배정된 경우였다. 이처럼 시험성적의 결과로 단계가 배정되

는 방식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은 적절하다는 응답을 나타냈다(사례 1, 5, 6, 7, 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시험을 보셨는데 그 필기시험 봤을 때 내용이 어떠셨어요? 외국인들이 시험 볼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괜찮았어요.(사례 5)

(사전평가 보셨죠?) 네. 거기서 사전평가 시험을 봤는데 34점을 맞았어요. (시험 어려웠어요?) 중국에서 한국말 조금 배웠어요. 잘 몰라요. 그냥 했어요. (그렇게 시험 보고 지금 저희처럼 반을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성격에 따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사례 1)

(2) 좋은 선생님과 만남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사례 1, 2, 3, 5, 6, 8, 9, 10)를 갖고 있으며, 특히 표준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에도 친숙한 선생님(사례 4), 대화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시청각매체를 자주 활용하는 선생님(사례7)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선생님 이야기 표준. 한국어 표준... 평택선생님 사투리도 있어요. 이 선생님 다 알아요. 다른 문화도 선생님 알아요. 일본사람 문물도 알아요. 이 선생님 잉글리쉬도 좋아요.(사례 4)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우리 대화, 회화 기회 많이 제공했어요. 우리끼리도 선생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디오랑 노래도 자주 보셔서 좋아요.(사례 7)

(3) 교육환경에 만족함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되는 S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교육 시설이나 환경에 있어 만족하는 응답을 나타냈다(사례 1, 2, 3, 5, 6, 7, 8, 9). 또한 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도 환경적으로 만족 여부의 요소가 되었다(사례 7, 8, 9).

(여기 장소는 어떠세요?) 좋아요... 오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오면 장소나 환경은 너무 좋아요.(사례 1)

(4)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사례 1, 2, 6, 7, 10)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이해과정에 있는 몇몇 결혼이민자(사례 3, 4, 5)들은 사람 사이에 필요한 예절을 배우는 문화 적응의 차원으로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과정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현재 내가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옆에 있을 때 존댓말을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국 예의 같은 것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것... 중국 여자하고 한국 여자 비교하면 차이 너무 많아요.(사례 3)

(이 과정을 공부하시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화요일에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문화가 틀려서 제가 잘못할까봐. 남편은 그냥 넘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싫어할까봐... 너는 왜 이렇게 먹느냐. 저는 몰라요. 숟가락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맛있게 먹는다고 할까봐. 그래 기분이 안 좋고... 나는 혼자 생각해요. 베트남에서도 나는 이렇게 먹는데. 어머니가 좀 기분 안 좋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것. 아, 한국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좀 기분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좀 빨리 먹거나 조심해서 먹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사례 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생은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증진과 비즈니스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의 계기(사례 1, 8, 9)로도 인식되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해요. 도움이 되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말을 배우니까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 같은 것을 배우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사례 1)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더 좋은 점이 있었나요?) 네, 공부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데 많이 좋아요. (조금만 자세히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공부한 게 비즈니스에서 좋아요.(사례 8)

(사회통합을 공부하는 것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 한지요?) 한국어를 배우니까 생활하는데 많이 편리해졌어요... 서류도 혼자 쓰기도 괜찮구요.. 서류 보는 것도 많이 알 수 있고요.(사례 9)

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 태도로 참여함

(1) 높은 참여 의욕을 가짐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연구대상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참여 의욕(사례 1, 2, 3, 4, 6)을 보였다.

지금까지 안 나온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보다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약속 미뤄도

되지만 이걸 한 번도 안 빠졌어요.(사례 3)

앞으로도 한국에서 국적을 따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 한 가지 맘만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왔습니다.(사례 6)

(2) 과정 이수 후의 포부를 밝힘

연구대상자(사례 1, 5, 6, 9, 10) 중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 후의 계획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국적 취득을 하게 되는데 좋을 것 같으세요?) 빨리 취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 출근하고 싶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으면 받아주지를 않는데 빨리 받아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 미싱 잘해요.(사례 1)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장사를 남편과 함께 계속 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직장을 따로 구하고 싶으세요?) 장사는 너무 잘 안되면 얘기 좀 클 때 회사 다니고 싶어요.(사례 5)

[중국을] 왔다 갔다 하구 있구요. 한국에서 돈 벌면서 나중에 국적 나오면 신랑도 초청해서...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국적을 따고 그리고 나서 직업을 갖고 싶으신가요?) 네, 직업을 갖고 싶어요... 국적 신청하기 전에는 계속 일을 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사례 6)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난관에 부딪힘

(1) 교육내용 이해가 어려움

연구대상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이해과정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사례 1, 2, 3, 4, 5)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서 오는 어려움(사례 2, 3, 4, 5)과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사례 1, 3)이 컸다.

(지금 공부하는 책은 쉬워요? 어려워요?) 책은... 사회통합... 이것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세요?) 그게... 한국 명사 다 있어요. 근데 한국말 조금 알아요.(사례 2)

(지금 한국문화 공부하는 것 어떠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한국문화 공부하는 것 어려워요... 지금 오전에 하는 한국문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국말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들었어요[들려요].(사례 4)

저는 생각보다 역사는 어려워요... (한국문화 공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더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책에 나오는 단어 모르는 것

너무 많아요.(사례 3)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어려워요. 역사 배우는 것 정말 어려워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되세요?) 조금 알아요. 집에 가서 이것 남편에게 물어봐요. 남편 말이 한국 사람이 배워도 이것 어려워. 나도 이해 못하겠어. 어려워. (책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역사 방면이 어려워요. (그럼 그런 것을 잘 알려면 사진 같은 것을 더 많이 넣어주면 좋을까요?) 사진보다 통역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호호호(사례 1)

(2)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앞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치러야 하는 종합시험에 대한 걱정(사례 2, 3) 역시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지금 시험 걱정 많이 있어요. 이 시험 어려워요. 저는 잘 몰라요. 걱정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사회이해과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맞아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공부 더해요... (50시간 끝나면 시험 보죠?) 네, 50시간 끝나고 시험 가요. 근데 지금 몰라요. 지금 걱정 많이 있어요.(사례 2)

어려워요. 우리 남편한테 일단 시험 떨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사례 3)

(3) 나이가 많아 공부하는 것이 부담됨

연구대상자 중에는 나이가 많아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사례 1, 6) 여겨지기도 했다.

이렇게 오기는 왔어도 막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머릿도 나쁜데. 공부해요 공부해요 하니까 힘들어요(사례 6)

(4) 가족 상황으로 수업에 오지 못하기도 함

갑작스러운 가족의 상황으로 수업에 불참해야 하는 경우(사례 5, 10)도 어려움으로 남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정을 할 때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진다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저 빠진 적 있어요. 그날 얘기가 아파서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래서 늦게... 그날 10시에 가는데 12시에 끝났어요.(사례 5)

(수업에 안 온 적 있으세요?) 있어요. 와이프가 아팠어요. 병원 갔어요(사례 10)

(5) 직장일과의 병행이 어려움

일반이민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와 직장일의 병행이 힘든 점(사례 6, 7, 8, 9, 10)을 공통적으로 토로하고 있었다.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하게끔 해줘야 좋겠는데. 일도 못하게 하고 공부만 하라 하니까 돈이 안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데도 그렇고. 언니한테도 그렇고. 식당 하는 언니가 있어요. 시집온 언니가. 언니한테 가서 설거지 같은 것 도와주고 언니가 용돈 주고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뭐 하다가 잘못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일을 못해주고 있어요... 일도 못하게끔 하고 다니면서 차비라도 벌어야 하는데 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 하니까 힘든 적이 많아요.(사례 6)

지금은 방학이라 다닐 수 있지만 사실 다음 주부터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수업 하루에 제공하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워요... 할 수 없으면 12월까지 여기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사례 7)

다른 것은 안하고 이것만 했어요. (왜요?) [일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업에 안 온 적 있으세요?) 중간에 중국 갔어요. (중국 비자 때문에?) 아니 중국 친구 일이 있었어요.(사례 10)

(6) 교육기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이 힘들

인근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없어 교육을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점(사례 1, 2, 4, 6, 10) 역시 난관으로 여겨졌다.

(안성에서 여기 오는데 어떻게 오세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요. (그러면 1시간 걸리나요?) 2시간 정도. 시간 많이 걸려요. 안성에서 공부하면 좋아요. 그런데 없어요.(사례 1)

(평택 포승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멀어요. 음... 2시간 반 정도.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평택역에서 내려요. 한 시간 걸려요. 우리 집에서 93번 버스 30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 전철 기다리고 병점 와요. 40분.(사례 4)

3.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요구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개선을 바랍

(1) 교육기관이 가까이에 있기를 바랍

연구대상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개선을 요하는 점을 질문한 결과 우선 교육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응답을 제시했다(사례 1, 6).

저는 여기 배우는 게 멀기 때문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사례 1)

길이 가까운 데로 하면... 안성으로 해줬으면... 여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데 제가 멀기가 너무 심해서요.(사례 6)

(2) 직장일과 병행이 가능한 저녁반·주말반이 개설되기를 바랍

일반이민자들의 경우 직장일과 병행이 가능한 저녁반 혹은 주말반 개설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사례 6, 7, 9, 10).

저녁수업도, 주말수업 제공하시면...(사례 7)

전 주말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말에 공부를 하시면 직장일과 함께 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시간이 좀... 평일날도 그렇구요. 주말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9)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말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으면 좋겠어요.(사례 10)

(3) 한국어교육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

한편에선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일반이민자들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한국어과정 초급2)를 마치고 바로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에 들어간 결혼이민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반영되었다(사례 1, 2, 3, 4, 8, 10).

(지금 공부하는 것 외에도 다른 공부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다른 것 공부하고 싶은 것 없어요... 한국어 교실 또 찾아요.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조금 공부했어요.(사례 2)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1단계, 2단계 공부했어요.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3단계 찾아가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얘기하는 것은 하지만 쓰는 것은 잘 몰라요.(사례 3)

(이 과정 다 끝나고 나면 더 공부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한국말 더 배우고 싶어요.(사례 10)

(4) 교재가 개선되기를 바랍

일부에선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교재가 좀 더 문화적인 이해를 도모(사례 7)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문법이나 단어가 어려워 그림(사례 8) 혹은 설명(사례 9)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개선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어교재는 어떻게 공부하는데 괜찮으세요? 문법이나 단어 설명이 잘되어 있나요?) 조금 어려워요. (그

럼 설명이 더 자세히 들어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림.(사례 8)

(책은 이해하는데 괜찮으세요? 어려우세요? 그림 뒤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설명하는 줄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9)

(5) 생활적응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람

한국어교육 외에 부가적으로 컴퓨터(사례 2, 3, 9), 자동차 운전(사례 3), 요리(사례 3, 5, 6), 미용(사례 5) 등의 생활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도 보였다.

한국에서 컴퓨터 이런 것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배우고 싶어요. 그것 배워야 해요. 그리고 한국 요리도 배워야 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이 들어가면 우리 떠느리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저는 지금 중국 사람이지만 우리 남편은 입에 맞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서 입에 안 맞이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한국 요리도 배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앉아 있으면 따뜻한 것 음식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3)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끝나고 시간을 내시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수원 쪽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문자가 왔는데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컴퓨터수업이 있대요. 근데네 시간이 안 맞아서요.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바빠서요? 그 시간에 뭐하세요?) 일하고 있죠.(사례 9)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현재 연구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모든 이민자들에게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은 결과 찬반의 견해가 나타났다.

(1) 의무화에 대해 찬성함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측(사례 1, 3, 8, 10)에서는 한국(사례 3)과 한국어(사례 10)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사례 3)나 '기회'(사례 7)로 인식하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마 다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나라는 이것 최고예요. 왜냐하면 되게 잘해줬어요. 센터에서, 나라에서, 선생님이 잘해줬어요. 이런 것 없으면 집에서 애 키우고, 시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너무 몰랐어요. 이런 것 어떻게 배우겠어요. 이런 것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3)

(한국에 살러 오신 외국 분들에게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무조건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사례 10)

(2) 의무화에 대해 반대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보이며 지금과 같이 개인 의사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에서는 교육 참여를 집안일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닌 결혼이민자의 입장(사례 5), 직장일과 병행하기에 힘든 일반이민자의 입장(사례 9)을 대변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만약에 공부는 [시작]했는데... 계속 집안일이 있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공부... 여기 다 알아두면 좋죠. 나중에 애가 크면 다시 가르쳐주고. (그럼 본인이고 싶은 경우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사례 5)

무조건 다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사례 9)

V.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경기도 소재 S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10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심층면접 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과정 및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경로가 대다수였지만 인터넷 검색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참여 동기는 한국 국적 취득과 한국어 습득 외에도 취업이나 사업을 위해 혹은 앞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제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결정한 이민자들은 사전평가를 거쳐 과정을 이수하면서 높은 참여 의욕을 갖고 이수 후의 계획으로 취업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교육기관까지의 장거리 이동, 육아와 질병 등의 가족 상황으로 인한 수업 불참, 한국어 과정 교재의 문법이나 단어 이해의 어려움, 한국사회이해과정 내 역사 및 관련 용어 등 교육내용의 난해함, 직장일과 교육 이수 병행의 난관 등이 존재했다. 이에 이들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반영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개선의 요구사항은 교육기관의 접근성 확보, 보다 이해를 도모하는 교

재로의 개선, 생활적응교육 실시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일반이민자는 직장일과 병행이 가능한 저녁반 혹은 주말반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참여 경험 상황에 의거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목표의 실효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한국 국적 취득의 방안이 된다는 점 외에도 한국어 습득과 그를 통한 취업 준비 혹은 향후 자녀를 위한 한국교육제도에의 적응 등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동기가 자못 컸다. Shim(2011)도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연관 지어 볼 때 본 연구대상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욕과 과정 이수 후 취업에 대한 계획을 갖는 가운데 한국어교육 외에도 컴퓨터, 운전, 요리, 미용 등과 같은 생활적응교육에 요구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왜 참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판단된다. 결국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원하고 있었고, 이 점에 주목한다면 진정한 사회통합의 견지에서 이민자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생활적응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한국어과정 이수 후에 이어지는 50시간 동안의 한국사회이해과정 교육만으로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기능과 직업 준비의 차원으로까지 교육 경험을 확장해나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다. 이에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보 및 교육 사례들을 발굴하여 그를 토대로 한국사회이해과정을 편성하고, 관련된 체험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원만한 사회 적응 및 개인의 능력 발휘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응답된 결과로 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교육장소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교육기관들의 양적 확충,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확

대를 논의한 선행연구들(Kim, 2009; Lee, 2010)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150개에서 269개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변화는 접근성의 보완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는 50여개에 불과하므로 부처 간 행정적 협의와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핵심적 운영주체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역할 확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다. 교육기관의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또 하나의 사항으로 교육시간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 가운데 일반이민자들은 주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직장일을 병행하기가 힘든 상황을 언급하면서 저녁반 혹은 주말반 개설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치중된 일방적 교육(Chae, 2011; Kim, 2009)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일반이민자들을 위해서도 시간 조율이 필요함을 역설한 문민(2010)의 견해와 일치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보다 다양한 이민자들의 특성을 감안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일반이민자들에게도 교육 참여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들이 일하는 산업현장과 연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012년 발표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들 중에는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농협,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이 포함된 특징을 보인다. 이들 기관들은 우선 근접한 산업현장을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시간 편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도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 외에 이민자들이 인터넷 검색에 의해 기관 홈페이지나 한국어로 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공고문을 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이 사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개별 안내문 발송, 문자 메시지 전송, 외국인 집합장소를 활용한 집단 홍보 등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정보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내용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일반이민자와 결혼이민자로 대별해 볼 때 이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겪는 교육내용 이해의 어려움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한국어과정 중급1) 후

은 4단계(한국어과정 중급2)까지 이수를 경험하면서 한국어 교재 내에 문화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설명이나 그림이 좀 더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이들의 요구를 감안한 한국어교재의 내용 보완 및 개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한국어과정 초급2)를 이수하고 바로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로 들어가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낮은 한국어수준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주제들로 구성된 한국사회이해과정 교재의 용어 혹은 역사와 같은 학습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다시 한국어교육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한국어과정의 이수단계가 결혼이민자와 일반이민자의 구분 없이 모두 450시간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급 이상의 한국어교육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국 2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실과의 연계 방안과도 결부된다. Park(2011)은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단계와 이수시간을 같게 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과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 간 긴밀한 연계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은 0단계(한국어과정 기초)에서 2단계(한국어과정 초급2)까지 동일하게 이수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급과정으로 진급을 하면 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모든 과정을 끝내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중급·고급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현 시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한국사회이해과정의 교재와 교육안이 구성되어 교육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 검토 및 적용이 요청된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던 서구사회는 인종소요, 폭동,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들의 실업문제, 외국인주거지역의 슬럼화 현상, 현지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배타적 태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현상, 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 빈곤을 겪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장미혜, 2010: 18)를 경험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이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개념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역시 기존

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진행해온 이민자의 한국 사회 내 조기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에 기초한 사업들(Kim, 2009)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김은미 등(2009)이 언급한 바처럼 다문화 관련 정책 시행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이루어질 때, 다양성만 부각한 채 다문화를 아우르며 다양성이 가져오는 시너지나 화합에 초점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생기는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간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합의된 사회통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과 그에 따른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Choi(2009)는 한국적 사회통합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준수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입장과, 소수 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결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김기하(2010)의 견해와 같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존의 강한 단일문화사회의 정신이 남아 있고, 아직은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문화주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재한외국인, 귀화자 및 그 자녀의 사회 적응 노력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다문화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양자 간의 마찰이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시키는 동시에 진정한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단순히 국적 취득을 위한 경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의 비전으로 집약된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의의는 일시적·단편적인 이민자 적응지원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장기적·거시적 운영체제에서 진정한 이민자와 국민 모두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느냐의 자문을 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아직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반의 여지가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국민 그리고 이민자들이 이에 대한 합의를 모으기 위한 의식 있는 노력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이민자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본 논문은 질적 연구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와 개선점을 찾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이 실제 참여를 통해 그들의 관점에서 느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데서 차별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와 동기,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모습과 참여 태도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한 찬반의 견해에까지 그들의 목소리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참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의 특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논문은 S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결혼이민자와 일반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이행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면접대상자를 확대하여 이민자의 비자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이민자들의 경우 국적과 비자의 유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상황의 어려움이 다를 수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교육 외에도 농어촌 등 소외지역 이민자 대상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과정 및 한국사회이해과정에서 활용되는 교재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담당자들의 교육 상황에 의거한 개선안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도 기대된다.

REFERENCE

김기하(2010). 한국의 이민정책.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 과정 교재**. 과천: 법무부.

김술(2008). 다문화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국제결혼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immigration.go.kr>.

김은미 · 양옥경 · 이해영(2009). **다문화사회, 한국**. 서울: 나남.

김일란 · 김남형(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향.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제 18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603-623.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200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이해과정 표준교안 개발. <http://www.kiip.kr>.

문민(2010).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진단과 개선 과제.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 창간호**, 33-41.

법무부(2012a). 법무부 공고 제2012-13호. <http://www.kiip.kr>.

법무부(2012b). 보도자료. <http://www.moj.go.kr>.

법무부(2012c).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http://www.moj.go.kr>.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2012). <http://www.socinet.go.kr>.

설동훈 · 김명아(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http://www.moj.go.kr>.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http://www.mogef.go.kr>.

장미혜(2010). **다문화사회와 미래 한국. 미래정책포커스**. 서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주성훈(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http://www.nabo.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0a).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교재**. 과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0b).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 <http://www.immigration.go.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안전부(2010). 보도자료.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2011). 외국인주민현황조사. <http://www.mopas.go.kr>.

Chae, B.(2011).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Master dissertation. Chongju University, Chongju.

Chae, O., Hong, D. & Song, B.(2009). Case study on Mongolian marriage-based immigrants adaptation to Korean family living.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4), 171-192.

Choi, Y.(2008). Analyses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s by census dat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279-298.

Gilbert, J., B. Stead, & J. Ivancevich(1999). Diversity management: a new organizational paradigm. *Journal of Business Ethics*, 21(1), 61-76.

Giorgi, A.(1985). 신경림 · 장연집 · 박인숙 · 김미영 · 정승은 역(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Hong, S. & Ahn, H.(2011). A qualitative study of change processes in women who left their abusive husband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1), 69-96.

Hong, S. & Kim, S.(2009).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female marital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19-146.

John W. Creswell(2007).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 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Kang, K. & Byun, M.(2010). The local government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37-51.
- Kang, K. & Chung, C.(2009). Adjustment factors for family life of multi cultural family coupl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2), 153-167.
- Kim, E.(2010). The effect of marital interaction on the marital instability of foreign wives in Gyeongn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3), 1-12.
- Kim, H.(2009).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and language education system*. Master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Kim, H. & Choi, S.(2010).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on effects of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53-176.
- Kim, J.(2009). *Research of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policies*.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Kim, O.(2006). A study on marital conflicts and abuse of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8, 33-44.
- Kim, O., Kim, K. & Lee, J.(2008). A study on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program for immigrant women's husban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1), 69-84.
- Kim, S. & Hong, S.(2010). Evaluations over operating projects and i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pecialist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35-58.
- Kim, Y. & Ahn, J.(2010). A study on analyzing actual condition for developing a married immigrant families support program for the consumer's viewpoi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1-13.
- Kim, Y.(2008).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adaptability of the resilient parenting program to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189-222.
- Kim, Y., Park, J., Kim H. & Paik S.(2008). A study of programs operation within all the related agency provides services for married-immigrant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21-140.
- Koh, S.(2011).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focusing on marriage immigrants*. Master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Seoul.
- Koo, C.(2007).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19-359.
- Kye, S., Kang, H. & Jeong M.(2009). The study on the marital life factors for the multi-culture famili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31-57.
- Lee, M. & Kang, K.(2007). Effects of a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2), 29-44.
- Lee, S.(2008). Intriducing immigrant integration courses in Korea. *Journal of migration & society*. 1, 347-357.
- Lee, S.(2010). The status and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1(4), 165-187.
- Lee, Y. & Lee, Y.(2010).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by residential a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1), 145-157.
- Michael Crotty 저. 신경림 · 공병혜 역(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Oh, Y.(2008). A study on developing 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4), 63-77.
- Park, J.(2011). The problems and the improving way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policy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2(2), 161-186.
- Park, S.(2009). *Research on social integration for early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Seosan.
- Park, S.(2011).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using direct payment by ol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2), 199-221.
- Seo, B.(2011). *Immigrant families of global marriages for so-*

- cial combination of multicultural political support measures.* Master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Ahsan.
- Seo, K.(2010). *A study on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society.*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Shim, J.(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KIIP」 under Ministry of Justice: focusing on the areas based in Cheongju.* Master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 Shin, Y. & Chang, J. (2010).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culturalism.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09-122.*
-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2003). *The age of migrant: Third edition,* N.Y.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 Sung, M.(2011). Comparative study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3), 63-82.*
- Yoo, K., Hong, S. & Kim, S.(2008). The study on the facilitating factors in early successful adjustment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2), 96-120.*

- 접수일 : 2012년 03월 13일
- 심사일 : 2012년 04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5월 08일